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

◇ 제 · 개정 이유

국립소방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

◇ 주요내용

가.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나. 수탁연구사업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

1)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수탁연구사업을 의뢰받거나 연구위탁용역사업의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의 요청(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)

2)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 의결·통보(안 제7조 제3항)

다. 수탁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라.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